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애 경 산 업 주 식 회 사

제 정 : 2016년 12월 02일

제1차 개정 : 2021년 02월 04일

제2차 개정 : 2026년 03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의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 ①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임원은 책임의식을 가지

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6.03.26.)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03.26.)
- ④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의 구성 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26.)

제8조 (해임)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3.26.)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제9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 소집청구
 -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3)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5)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6)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3)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5)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6)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④ 기타 법령이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등)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17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감사인 선임 등)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02.)

본 규정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04.)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03.26.)

본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